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19
----------	------

2021년 03월 0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세열 의원 외 24명
- 나. 제안일 : 2021년 02월 01일
- 다. 회부일 : 2021년 02월 09일
- 라. 상정일 :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2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세열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19.12.10)에 따라 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 중 ‘제91조제6항’을 ‘제91조제7항’으로 하여 상위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 안 제4조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1. 2. 16. ~ 2. 23.)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지명위원회 근거 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2.10)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1조(지명의 결정)</p> <p>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91조(지명의 결정)</p> <p>⑤ <삭 제 > (2020.2.18.개정, 2021.2.19.시행)</p> <p>⑥ <신 설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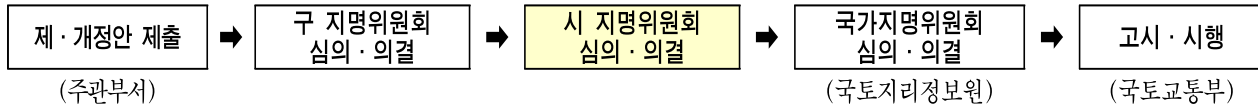
<p>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9. 12. 10개정, 2021.1.1시행)</p> <p>⑦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2019. 12. 10개정, 2021.1.1시행)</p>
---	--

- 본 개정안은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근거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9.12.10.) 및 시행(2021년 1월 1일)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지명위원회 근거법령과 정합성을 일치시켜 조례의 적용 및 해석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른 조례의 경우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는 행정국의 각별한 주의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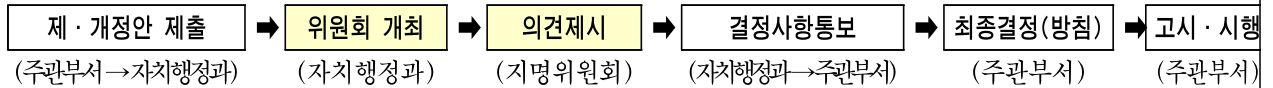
<p><input type="checkbox"/>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 지명위원회 조례 ○ 구성현황 : 9명(당연직 2, 위촉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행정1부시장), 부위원장(행정국장), 위촉직위원(국문학자, 지리학자 등)

□ **심의대상 절차 및 기능**

① **의결**(자연지명) : 산맥, 산, 폭포, 바위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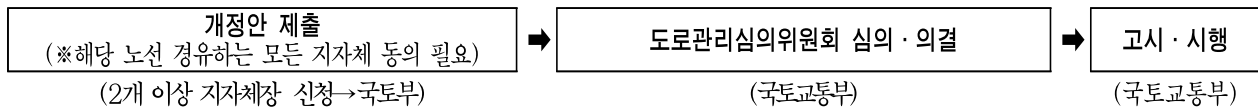
② **의견제시**(인공지명) : 도로·터널·지하보도·공원·지하철역 등 **시설명칭**



※ 2006년 이전에는 시설명도 심의·의결했으나,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던 것으로, '06.3.16 지명위원회 조례를 정비하여 **시설명 제·개정**은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 관한 조정

③ **기타**

- **고속 국도**(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노선명 제·개정



- **철도 역명** 제·개정 :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한편, 서울시 지명위원회는 식별가능한 정체성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 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여된 지명을 제·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이후 1,387건을 심의하고 있는 바, 한글사용 원칙 등 지명 제·개정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개최실적('16~'21.1월 기준)>

◆ **위원회 구성**(’85년) 이후 매년 1~3회 개최 ('21년 1월 현재 총 80회/ 1,387건 심의)

구 분	개최횟수 (총 건수)	개최일시	심 의 건 수	비 고
2016	2회 (39건)	2016.4.19	20건(공원명 1건, 시설명칭 19건)	
		2016.11.18	19건(공원명 19건)	
2017	2회 (13건)	2017.2.7	12건(경전철 역명 10건, 공원명 1건, 시설명칭 1건)	
		2017.2.20	1건(경전철 역명 1건)	서면심의
2018	3회	2018.5.4	12건(공원명 4건, 시설명 2건, 지하철 역명 6건)	

	(43건)	2018.7.4	16건(지하철 역명 1건, 시설명 1건, 공원명 14건)	
		2018.12.1	15건(지하철 역명 2건, 하천명 1건, 도로시설명 4건, 공원명 8건)	
2019	2회 (19건)	2019.3.29	1건(교량명)	서면심의
		2019.12.9	18건(지하철 역명 5건, 하천명 1건, 시설명 4건, 공원명 8건)	
2020	2회 (16건)	2020.11.25	5건(도로시설명)	
		2020.12.14	11건(도로시설명 3건, 지하철 역명 8건)	

[지명 제 · 개정 일반원칙]

일반원칙	세부내용
①한글 사용 원칙	가능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영어는 지양
②명확성의 원칙	두개 지명의 두(頭)음을 따서 만드는 등 어원이 불분명한 합성어(혼성), 출처가 불명확한 지명은 지양
③간결성의 원칙	지명은 가능한 짧게 정하여 3~4개 음절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도 좋은 것을 채택
④고유명칭 우선 사용 원칙	역사성 및 상징성 등이 증명된 옛 지명은 가능한 살려서 사용
⑤단일 지명 사용 원칙	원칙적으로 지명을 부여할 1개의 객체에는 1개의 표준 지명을 지정, 혼란 방지
⑥지역주민의견 존중 원칙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하면서 현지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지명을 우선적으로 선택
⑦인명 배제 원칙	이미 그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인명은 가능한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⑧지속성의 원칙	이미 오랫동안 사용한 지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지명이거나 신(新) 또는 뉴(new) 등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지명은 가급적 지양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세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19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1일

발 의 자 : 이세열 의원(1명)

찬 성 자 : 권영희, 김경우, 김생환,
김수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춘례, 김혜련,
노승재,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송아량, 송정빈,
이광호, 이영실,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정진술,
정진철, 최 선, 황인구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19.12.10)에 따라 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 제1조 중 '제91조제6항'을 '제91조제7항'으로 하여 상위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 나. 안 제4조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1조제6항”을 “제91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